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3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 · 어기구 · 박 정 ·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 의안번호 : 310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정안은 의원 개인이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1항 및 안 제1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 ----- ----- -----이 조 및 제128조의2-----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① 의원은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128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생략)	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으로 본다. 제128조의3(결산의 심의기한) (현행 제128조의2와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함.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자료확보를 보다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의 신속성·적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의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국회법상 대외적 행정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대

표권¹⁾을 갖는 의장·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결정은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 이에 따라 현행법도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²⁾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표-2] 현행 국회관계법상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법률	자료제출요구 요건
인사청문회법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국회법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청문회,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 후 해당 기관에 요구
국정감·조사법	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1)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표-3] 주요국 의회의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국가	주체	내용
미국	(상원) 상임위, 소위원회	소환장에 의해 서신, 서적, 문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원) 위원회, 소위원회	서적·기록·서신·각서·문서 등의 제출을 소환장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요구
영국(하원)	공범안심사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의사규칙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여부를 각 위원회별로 달리 규정
일본	각 의원(議院)과 각 의원의 위원회	각 의원(議院) 또는 위원회가 심사·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

* 자료: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3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제128조의2제2항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128조제2항(제출형식)·제5항(제출기한) 및 제6항(절차 등)³⁾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의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 대상 조항의 문언을 볼 때 “의장이나 위원장”을 의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4] 수정의견(안)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예시)
<신 설>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 등 제출 요구) ① 의 원은 안전의 심의 또 는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와 직접 관련된 서 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 하여는 제128조제2항 ·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 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으로 본다.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 등 제출 요구) ① 의 원은 안전의 심의 또 는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와 직접 관련된 서 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 하여는 제128조제2항 ·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 장이나 위원장”은 “의 원”으로 본다.

참고로, 국회 관계법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2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5] 유사취지 계류법률안의 주요 내용

동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증언감정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국감국조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김정호의원안)
• 의원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	• 의원의 안건심 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발부 • 의원 자료 제출요구서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 •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의원의 고발 근거 의무 규정	• 위원의 국정감사·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근거 마련 •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	• 위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 • 요구시 5일 내 제출 및 경과 사유서 제출 • 불응 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경고 근거 마련

문 의 처

02)6788-5014